

제도 안내

1. 연구근접지원인력 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에 따라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을 말합니다.

2. 연구근접지원인력뱅크제란?

- 추진배경 : 연구비 청구·정산 업무를 도와줄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필요한 연구자에게 연구비 관련 지식을 습득한 지원인력을 적시에 연결시킴으로써 연구자의 연구행정 업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운영형태 : 산학협력단에서 정기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모집·고용한 후, 실무형 인력양성을 위해 연구비 규정 교육과 SRnD 실습 교육을 시행합니다.
- 연구근접지원인력 유형: 초단시간 근로자(주 14시간, 시급 2만2천 원)
- 매칭 절차 : 연구자 신청 ▶ 연구자-지원인력 면접 ▶ 매칭 활용(최대3개월)



3. 문의

산학협력단 운영기획실 기획팀 : 02-880-1126

연구자 매칭 안내사항



1. 근접지원인력의 보수 및 복무규정

매칭 기간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이하 '근로자' 와 같다)은 산학협력단과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보수 및 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자의 급여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합니다.

* 근로시간 : 주 14시간, 시급 : 2만2천 원



2. 근무일(출근일)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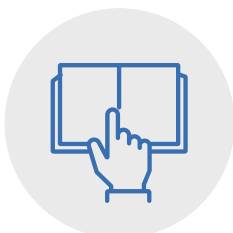
근무일은 연구자-근로자 간 합의하시어 변경 가능하지만, 매칭 기간 동안 근무일 조정 시 산학협력단-근로자 간 '계약변경합의서' 작성이 필요하오니 산학협력단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매칭시작일과 종료일

매칭 기간은 매칭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까지로 하되,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2025. 4. 15.~2025. 6. 30.



4. 연구수행 지원 업무

근로자의 업무는 연구과제의 연구수행 지원 업무에 한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5. 매칭 활용 합의서

매칭 시 산학협력단-연구자 간 매칭기간, 근로자의 평가 의무, 활용중단 및 변경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고용 결정 시 참고사항



1. 근로계약 체결 및 보수 기준

매칭 종료 시 연구자께서 근로자의 고용을 결정하였다면

- ① 산학협력단-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 ② 연구자(관리기관)-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다만, 연구자(관리기관) 고용 시에도 시급 및 근로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

- 근로시간 : 주 15시간 미만, 시급 : 2만2천 원
-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해당 없음



2. 근로자의 인건비

관리기관 고용 이후 근로자의 인건비는 하나 혹은 다수의 연구과제-직접비에서 지급하시되,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은 불가합니다.



3. 연구수행 지원 업무

근로자의 업무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과제의 연구수행 지원 업무에 한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4.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가이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단일/다수 과제의 참여를 불문하고 계약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서울대학교 내에서의 근로시간을 기준



5. 매칭 종료 후에는..

연구자께서 근로자의 고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산학협력단으로 복귀하여 산학협력단-근로자 간 근로계약서의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서식1] 연구근접지원인력 매칭 신청서

붙임 1

연구근접지원인력 매칭 신청서(연구자)

* 필수 입력

연구자 자 정 보	성 명 *	김나무		
	소속기관명 (고용 예정 기관) *	000연구소	근 무 장 소 *	(관악) 00동 00호
	이 메 일 *	0000@snu.ac.kr	휴 대 전 화 *	010-0000-0000
	활 용 구 분 *	☐ 단독 고용 ☐ 공동 고용 (공동 활용 연구자:)		
의 무 사 항	인 건 비 보 *	☐ 직접비-근접지원인력인건비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 지급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과제에서 인건비 지급 시 근접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에 대한 지원기관 승인(확인)이 필요함 ※ 산학협력단 인건비 지원(최대 3개월) 이후 고용 연속성을 고려하여 직접비에서 근접지원인력인건비 확보가 가능해야하고, 산학협력단 고용 시 보수기준 이상으로 확보 권고(초단시간: 시급 2만2천 원)		
	신 청 구 분 *	☐ 초단시간		
신 청 사 항	※ 필요 시 아래 사항 작성			
	근 무 일 수	☐ 주5일 ☐ 주4일 ☐ 주3일 ☐ 주2일 ☐ 주1일		
	근 무 요 일 (복수선택 가능)	☐ 월 ☐ 화 ☐ 수 ☐ 목 ☐ 금 ☐ 모든 요일 가능		
	근 무 시 간	☐ 활용예정 시간(00:00~00:00)		
	근 무 형 태	☐ 사무실 ☐ 재택 ☐ 사무실+재택		
	선 호 성 별	☐ 남 ☐ 여 ☐ 성별무관		
	기 타	활용 시간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매칭활용기간 동안은 산학협력단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을 준수합니다.

- 초단시간(주 14시간)

[서식2] 매칭 활용 합의서

붙임 2

매칭 활용 합의서(산학협력단-연구자)

매칭 활용 합의서

1. 매칭 활용 정보

성명	근접지원인력 성명
매칭 활용 기간	2025. . 부터 2025. . 까지
※매칭 종료일은 매칭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되, 매칭활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산학협력단은 연구근접지원인력을 연구자에게 매칭 후 매칭 활용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

- 매칭 활용 기간 동안은 산학협력단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준수

3. 연구자는 매칭 활용 기간 종료되기 30일 전에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활용 여부를 결정하여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직접 고용 시 산학협력단 퇴직 및 연구관리기관 발령 등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함

4. 연구자는 매칭 활용 기간 종료 이후 연구근접지원인력과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구관리기관-연구근접지원인력의 계약을 통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직접 고용 시, 시급(2만2천원) 및 근로시간(주 14시간) 확보 필요

5. 연구자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매칭 활용 기간 중에 매칭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중단신청(매칭 활용기간까지만 활용을 포함한다)은 연구자별 1 회로 한정한다.

※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시 참고사항

연구근접지원인력이란?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 지원인력을 말합니다.

-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금지
- ▶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 사용 가능
- ▶ 연구수당 지급 불가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김 주 한

(인)

<연구자>

소속기관명 :

성 명 :

(인)

[서식3] 연구근접지원인력 직무 수행 평가서

붙임 3 연구근접지원인력 직무 수행 평가서(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직무 수행 평가서

매칭 인력	성 명	근접지원인력 성명	활 용 구 분	☒ 초단시간
	관리기관명		근 무 장 소	(관악) 00동 00호

선 택 구 분	☐ 매칭활용 기간까지만 활용 ☐ 매칭활용 종료 후 직접 고용 (매칭인력과 사전 논의 필요) ☐ 매칭활용 중단
중 단 사 유 (해 당 시 작 성)	

평가요소	세부내용	배점	평가
실무 능력 (70)	·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도	15	
	· 연구근접지원인력으로서의 역할 인식에 대한 이해	15	
	· 업무 시 진취적 태도 및 적극성	15	
	· 일정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한 업무 처리	15	
	· 문제 해결 능력	10	
태도 (30)	· 논리적 응답 및 명확한 의사표현 능력	10	
	· 용모, 복장, 예의바른 태도	10	
	· 협동성 및 원만한 대인관계	10	
합계		100점	0

평가자 :

※ 매칭종료 1개월 전 제출